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예명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고 한다) 학칙의 시행에 있어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1.>

제1조의2(과정 및 정원) ① 본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단기선교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21.08.26.>

② 본교에 설치한 석사 및 박사학위, 학과(학부)의 학생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01., 2015.10.01., 2016.05.12., 2017.07.04., 2019.12.29., 2020.05.14., 2021.08.26., 2024.01.30.>

과정	학부	전공	세부전공		학위	입학 정원	
석사 과정	신학부	신학	목회학	목회학	신학석사(M.Div.) Master of Divinity	10	
			성서신학	구약학, 신약학	신학석사(Th.M.) Master of Theology	63	
			이론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학, 예배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선교학, 영성신학, 글로벌리더십, 교회성장학, 오순절과 은사신학, 치유신학	문학석사(M.A.) Master of Arts		
			음악학	교회음악학, 예배음악학			
			예수이름신학				
인문사회학부	석사과정	리더십학	글로벌리더십, 비즈니스리더십, 크리스천리더십		리더십학석사(M.A.) M.A. in Leadership	63	
		상담심리학	가족상담, 집단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노인복지 상담, 교류분석		비즈니스리더십학석사 (M.B.L) M.B. in Leadership		
	인문사회학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복지상담심리, 아동보육복지, 시니어 문화복지, 국제사회복지		상담심리학석사(M.A.) M.A. in Counseling Psychology		
		정신분석상담학	프로이트주의, 라캉주의, 대상관계, 응용정신분석학, 가족상담, 집단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노인복지상담, 중독상담		사회복지학석사(M.A.) M.A. in Social Welfar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 및 선교, 한국어교육 및 복지, 한국어교육 및 상담, 한국어교육 및 리더십		정신분석상담학석사 (M.A.) M.A. in Psychoanalysis Counseling		

신학부	신학	성서신학	구약학, 신약학	철학박사(Ph.D.) Doctor of Philosophy 신학박사 (Ph.D.) Ph.D. in Theology	15
		이론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학, 예배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선교학, 영성신학, 글로벌리더십, 교회성장학, 오순절과 은사신학, 치유신학		
		음악학	교회음악학, 예배음악학		
		예수이름신학			
박사과정	인문사회학부	리더십학	글로벌리더십, 기술경영리더십, 비즈니스리더십, 정신분석리더십, 정치리더십, 커뮤니케이션리더십, 크리스천리더십, 협상리더십	리더십학박사(Ph.D.) Ph.D. in Leadership	15
		상담심리학	가족상담, 집단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노인복지 상담	상담심리학박사(Ph.D.) Ph.D. in Counseling Psychology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복지상담심리, 아동보육복지, 시니어 문화복지, 국제사회복지	사회복지학박사(Ph.D.) Ph.D. in Social Welfare	
		정신분석상담학	프로이트주의, 라캉주의, 대상관계, 응용정신분 석학, 가족상담, 집단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노 인복지상담, 중독상담	정신분석학박사(Ph.D.) Ph.D. in Psychoanalysis 상담학박사(Ph.D.) Ph.D. in Counseling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 및 선교, 한국어교육 및 복지, 한국 어교육 및 상담, 한국어교육 및 리더십	한국어교육학박사(Ph.D.) Ph.D.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③ 학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학생 전용 강의 및 국내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 강의 형태의 유학생 특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01.22.>

④ 학칙 제30조제2항에 근거한 영어사용과정은 졸업이수학점의 50%이상을 영어로 강의를 하는 영어트랙 학사단위로 모집단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17.07.04.>

⑤ 학칙 제30조제3항의 이중언어과정은 졸업이수학점의 50%이상을 한국어 외에 외국어 또는 한국어·외국어 통역 제공으로 진행되는 학사단위로서 모집단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17.07.04.>

제2장 입 학

제2조(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대학이상 과정의 전학년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심사<개정 2021.08.26.>

2. 면접: 선교목회자 또는 관련 전공분야 자질, 능력, 적성, 인격 등 심사<개정 2021.08.26.>

3. 필기시험: 성경, 영어, 전공논술

② 본교는 신입 및 편입학 전형을 매년 2회 시행한다.<신설 2014.4.24>

제3조(입학지원서류)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학 지원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학위증명서 사본 1통
4.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통(신학부)
6. 반명함판 사진 3매
7. <삭제>
8. 자기소개서 1통

제4조(입학사정) 본교 입학허가에 관한 사정방안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등록

제5조(등록) ① 본교 학생은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수강신청 자격을 얻는다.

②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자율적 경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1.08.26.>

③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분납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 중간고사 전까지 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8.26.>

제6조(학점등록) 학점이 부족하여 수학연한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목당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개정 2021.08.26.>

제4장 수강신청, 교과이수, 성적평가

제7조(수강신청) 등록을 필한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과 기 취득한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은 기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4.18.>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임의로 수강과목을 변경한 경우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석사학위과정의 수강신청 학점 수는 9학점(M.Div.는 18학점)까지 할 수 있다. 단, 초과학점 신청은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01.>

5. 이수한 과목의 평점이 졸업요건 평균성적 이하인 경우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8.04.>

제8조(교과이수) ① 본교 재학생이 이수해야 할 과목은 ‘교과목 개설에 관한 내규’로 정하며 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01., 2015.10.01., 2017.01.22., 2017.07.04., 2021.08.26., 2024.01.30.>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	신학 (M.Div.)	사회복지학·문학 (M.A.)		신학 (Th.M.)	연계과정 신학 (Th.M.)	상담심리학 · 리더십학 · 정신분석 상담학 (M.A.)	한국어 교육학 (M.A.)	신학·철학·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리더십학· 정신분석상담학· 한국어교육학 (Ph.D.)
학점	필수 57 선택 21	논문 제출 과정	필수 15 선택 12 논문 6	필수 15 선택 9 논문 6	필수 12 선택 3 논문 6	필수 15 선택 9 논문 6	필수 18 선택 9 논문 6	전공 36 논문 6
		비논문 과정	필수 15 선택 18	필수 18 선택 15	필수 12 선택 9	필수 15 선택 18	필수 18 선택 15	
졸업 학점	78	논문 제출 과정	33	30	21	30	33	42
		비논문 과정	33	33	21	33	33	

② 각 전공의 선택과목은 다른 전공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1.08.26.>

③ 석사과정 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의2(교과과정)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은 전공지도교수가 정하는 기본 과목과 학위논문계획에 따른 개설과목으로 한다.<개정 2021.08.26.>

② 목회학전공 신학석사(M.Div.) 취득 후 신학석사(Th.M.)를 입학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연계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2021.08.26.>

제8조의3(연구보고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을 위해 제시하는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수시로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및 출석, 과제물, 기타 교수의 개별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10조(성적처리) 성적은 과목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확정된다.

1.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과오 시 담당교수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4.18.>

2.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담당교수는 해당학생의 성적을 당해 학기 종료 2주전까지는 확정하되 B등급 이하로 한다.

3. 제2호의 기일 내에 성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개정

2021.08.26.>

4.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의 평균에 가산한다.
5. 중간고사 이후 중병, 군 입대로 인해 수학 불가능한 자로 출석일수가 3분의 2이상인 자는 중간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08.26.>

제11조(성적무효) 다음 각 호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해당과목의 성적
2.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과목의 성적
3. 기타 적법한 절차 없이 취득한 성적

제12조(성적정정) 성적통지서 내용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학처에 성적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정정은 공고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과목담당교수를 경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4.18.>

제5장 학적에 관한 사항

제13조(결석)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학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결석계) 재학생은 1주일 이상 결석할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신설 2024.01.30.>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신설 2024.01.30.>

제15조(복학) 휴학한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등록금납입통지서 사본 1부
3. 전역증(군휴학자에 한함) 사본 1부

제16조(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본인 각서 1부

제6장 졸업시험 및 요건

제17조(성경고사) 신학석사과정(목회학 전공)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는 재학기간 중 매 학기 1회 실시하는 성경고사에 응할 수 있고 졸업 전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6.19.>

제18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석사학위과정(논문 제출과정에 한함)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해당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2016.5.12., 2017.01.22., 2023.4.18.>

1.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와 논문에 관한 내용으로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이 주관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3.4.18.>
2. 구술시험은 전공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지도교수와 관련 교수가 공동주관하며, 100 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3.4.18.>
3.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부터, 박사과정은 4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20.08.04.>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연2회 실시한다.

제19조(졸업요건) 본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1. 신학석사과정(목회학전공)
 - 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취득학점 평균성적이 2.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08.04.>
 - 나. 예배실습과 교회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 성경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그 외 석사과정
 - 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하고, 취득학점 평균성적이 2.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08.04.>
 - 나. 논문 제출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
 - 다. 삭제<2023.4.18.>
3. 박사과정
 - 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통합 평균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08.04.>
 - 나.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교수학습세미나) <삭제 2020.08.04.>

제7장 학위논문

제20조(논문계획서) 졸업학년 초에는 논문계획서(A4용지 20매 정도)를 작성하여 지도교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6.19.>

제21조(논문개요) 논문계획서가 승인된 학생은 논문개요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제출자격) 본교의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개정 2020.08.04., 2023.4.18.>

2. 6학기 이상(석사는 4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석사는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개정 2020.08.04., 2023.4.18.>

3.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개정 2020.08.04.>

제23조(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A4용지 100매 이상의 논문원고를 2부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논문지도교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해당 교수와 주임교수(학과장)가 협의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4.18.>

제24조(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지도교수는 당연위원이 된다.<개정 2017.01.22.>

1. 삭제<2023.4.18.>

2. 석사과정 논문심사는 외부교수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이 한다.

3.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외부교수 2인을 포함한 5인의 심사위원이 한다.

4. 외부교수는 논문 주제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문서심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심사위원 구분배정의 수는 논문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청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주임교수 또는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본교 소속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5조의2(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제1차 예비심사(내부심사, 문서 또는 면담심사), 제2차 본심사(문서 또는 면담심사), 제3차 최종심사(면담심사)로 구성된다. 각각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한다.<개정 2020.08.04.>

② 제1차 예비심사(내부심사, 문서 또는 면담심사)가 통과되면 심사위원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20.08.04.>

③ 제2차 본심사(문서 또는 면담심사)가 통과되면 심사위원은 본심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면담심사는 논문 제출자, 지도교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0.08.04.>

④ 제3차 최종심사(면담심사)는 논문 제출자, 지도교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한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학위논문 인준서에 날인하여 이를 증명한다. 단, 조건부로 통과된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한 후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은 다음 제본한다.<개정 2020.08.04.>

제26조(심사횟수) 논문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논문인쇄) 학위논문은 다음의 규격에 따르며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의 기준으로 한다.

1. 규격: 가로 19.5cm, 세로 26.5cm.

제본: 양장 및 페이퍼바운드

2. 표지: 별지 1,2,3,4호 양식

3. 논문의 기본형식

가. 표제지 나. 속표지 다. 인준서 라. 사사(필요시) 마. 서문

바. 목차 사. 본문 아. 참고서적 목록 자. 부록, 색인 기타

제28조(논문심사료) 논문제출자는 논문심사에 앞서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본교 도서관에 제본한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로 통과된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 후 제본하여야 한다.<개정 2021.08.26.>

제8장 명예박사학위

제30조(자격)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과 선교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및 본교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2014.06.19.>

제31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38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신설 2014.06.19.>

제32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신설 2014.06.19.>

제9장 예명콜로키움(Yemyung Colloquium)<개정 2021.08.26.>

제33조(예명콜로키움) 예명콜로키움은 본교의 정체성 확립과 신학발전을 위하여 본교 교수진,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 또는 학위 취득자를 위한 학술발표의 장으로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참석할 수 있다.<신설 2014.06.19., 개정 2015.10.01., 2021.08.26.>

제10장 학위의 수여<신설 2021.08.26.>

제34조(학위종별) 세부 학위명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별된다.

<신설 2021.08.26.>

제35조(학위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한다.<신설 2021.08.26.>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시행세칙 변경사항(2003.3.1., 2002.9.1, 2004.9.1, 2009.6.1, 2011.9.1, 2013.3.1.)은 절차를 거쳐 2014년 6월 19일로 통일 적용한다. 단, 학생과 연관된 해당 조항은 2013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4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과정별, 전공별 학위수여명
〈개정 2024.01.30.〉

1. 석사학위과정

학 부	전 공	학위명(국문)	학위명(영문)	후드코드
신학부	목회학	신학석사	Master of Divinity	PANTONE 485C
	신학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	PANTONE 485C
		문화석사	Master of Arts	PANTONE 5315C(흰색)
인문 사회학부	리더십학	리더십학석사	M.A. in Leadership	PANTONE 470C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석사	M.A. in Counseling Psychology	PANTONE 5315C(흰색)
	정신분석상담학	정신분석상담학석사	M.A. in Psychoanalysis Counseling	PANTONE 5315C(흰색)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M.A. in Social Welfare	PANTONE 3005C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석사	M.A.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ANTONE 306C

2. 박사학위과정

학 부	전 공	학위명(국문)	학위명(영문)	후드코드
신학부	신학	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PANTONE 2768C
		신학박사	Ph.D. in Theology	PANTONE 485C
인문 사회학부	리더십학	리더십학박사	Ph.D. in Leadership	PANTONE 2768C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박사	Ph.D. in Counseling Psychology	PANTONE 2768C
	정신분석상담학	정신분석학박사	Ph.D. in Psychoanalysis	PANTONE 2768C
		상담학박사	Ph.D. in Counseling	PANTONE 2768C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박사	Ph.D. in Social Welfare	PANTONE 3005C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박사	Ph.D.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ANTONE 306C